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9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3일

발 의 자 : 이승로·김진철·최웅식·최조웅
장우윤·전철수·이병해·장흥순
유찬중·이순자·이정훈·황규복
의원(12명)

1. 제안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에 “인공조명,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정의에 “인공조명”,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나.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별 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는”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같은 호 중 “일조”를 “일조, 인공조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악취”를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토록”을 “시정하도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환경보전 계획(이하 “환경보전 계획”을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3항에 의한”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2 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 안에서”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환경질의조사”를 “환경질의 조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자치구·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시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략)</p> <p>④ <u>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u> -----.</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u> -----.</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u> -----.</p>	<p>제2조(기본이념)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u> -----.</p>
<p>제3조(기본원칙) <u>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1. ~ 6.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u>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p> <p>1. ~ 6. (생략)</p>	<p>제3조(기본원칙) ----- <u>각 호</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 <u>각 호</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원칙) ----- <u>각 호</u>-----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u>환경</u>”이라 함은 <u>자연환경과 생활환경</u>을 말한다.</p> <p>2. “<u>자연환경</u>”이라 함은 <u>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u></p>	<p>제4조(정의) ----- -----.</p> <p>1. -----<u>이란</u> ----- -----.</p> <p>2. -----<u>이란</u> ----- -----</p>	<p>제4조(정의) ----- -----.</p> <p>1. -----<u>이란</u> ----- -----.</p> <p>2. -----<u>이란</u> ----- -----</p>	<p>제4조(정의) ----- -----.</p> <p>1. -----<u>이란</u> ----- -----.</p> <p>2. -----<u>이란</u> ----- -----</p>	<p>제4조(정의) ----- -----.</p> <p>1. -----<u>이란</u> ----- -----.</p> <p>2. -----<u>이란</u> ----- -----</p>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

3. -----이런 -----
----- 일조, 인공조명 -----
-----.

4. -----이런 -----

-----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

5. -----이런 -----

-----.

6. -----이런 -----

-----.

7. -----이런 -----

-----.

제5조(시의 책무) ① -----
----- 각 호 -----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 10. (생략)

11.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5조의2(보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시민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정하도록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보전계획) ① -----

서울특별시환경보전 계획(이하 “환경보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생략)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⑤ (생략)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②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6조제2항에 따른 -----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
----- 제12조제3항에 따라 -----

-----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 별표 1-----.

제15조(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
제14조에 따른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삭 제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환경영향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② (생 략)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② 제1항에 따른 -----
별표 2-----.

제1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른 -----
-----.

제16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참여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③ ~ ④ (생략)

제26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도록 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2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환경질의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생략)

----- 범위 안에서 -----.

제26조(시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환경보전에 관한 자문) ① ----- 제58조제2항에 따라 -----
----- 제26조제2항에 따른 -----
-----.

② -----
제1항에 따른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

2. 제14조에 따른 -----

3.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질의 조사 -----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환경백서) ① (생 략)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환경백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